

대한건축학회 定款

本會는 建築學에 對한 學術的 研究을 進흥시키고 建築技術의 進歩를 圖하며 建築文化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Faint Korean text describing the association's purpose and activities)

社團法人大韓建築學會 定款

( 1971年 4月 17日 制定 )  
( 1974年 6月 12日 改定 )  
( 1977年 5月 26日 改定 )  
( 1978年 6月 9日 改定 )  
( 1979年 5月 30日 改定 )

第 1 章 總 則

- 第 1 條 ( 名稱 ) 本會는 社團法人 大韓建築學會라 稱한다.
- 第 2 條 ( 目的 ) 本會는 建築에 관한 學問技術을 研究 鍊磨하여 建築技術者의 地位向上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여 建築文化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3 條 ( 本部所在地 ) 本會는 本部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 第 4 條 ( 支部設置 ) 本會는 理事會의 決議를 얻어 本部所在地 以外 必要한 支部를 둘 수 있다.
- 第 5 條 ( 事業種目 ) 本會는 第 2 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 1. 建築에 관한 調査 및 研究指導
  - 2. 建築에 관한 會誌 圖書 其他 印刷物의 刊行
  - 3. 建築에 관한 講習會·講演會·懇談會·展覽會·見學會 等の 開催
  - 4. 建築에 관한 計劃·鑑定·監督 및 技術檢討에 대한 國家 公共機關 기타 依賴에 관한 事項
  - 5. 國內外 관계 諸學會와의 交流 및 會議參席
  - 6. 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項

第 2 章 會 員 및 會 費

- 第 6 條 本會員은 다음과 같이 5種으로 한다.
  - 1. 正會員
  - 2. 準會員
  - 3. 學生會員
  - 4. 名譽會員
  - 5. 特別會員
- 第 7 條 ( 會員資格 ) 各 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 1. 正會員 : 正會員은 다음의 資格中 하나를 具備하고 正會員 2人 以上

의 推薦으로 理事會가 承認한 者

(1) 正規大學에서 建築系統學科를 卒業한 者

(2) 專門大學에서 建築系統學科를 卒業하고 建築分野實務經驗 2年以上인 者

(3) (1), (2)項과 同等以上の 資格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者

2. 準會員: 專門大學에서 建築系統學科를 卒業한 者 또는 建築分野에 相當한 期間을 從事하고 實務經驗이 있는 者로서 正會員 2人以上の 推薦으로 理事會가 承認한 者

3. 學生會員: 正規大學, 專門大學의 建築系統學科 在學生 또는 이에 準하는 者로서 正會員 2人以上の 推薦으로 理事會가 承認한 者

4. 名譽會員: 建築系統 및 이에 關聯된 科學技術分野에서 學識德望이 卓越한 者 또는 本學會 發展에 크게 이바지한 内外國人中에서 理事會의 決議로 推戴한다.

名譽會員은 會員이 갖는 모든 權利를 가지며 入會金 및 會費를 免除 받는다.

5. 特別會員: 建築에 관계있는 個人 또는 團體로서 本會의 目的을 贊助하는 者中 理事會의 決議로서 選定된 者

第 8 條 (會費) ①會員은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一但 納付한 會費는 返還하지 않는다. 會員의 入會金과 會費는 理事會에서 定한다.

②本會 創設당시부터 正會員으로서 滿 65세에 달한 會員 및 35年 이상 會費를 納入한 會員은 이후 會費를 免除한다.

第 9 條 (除名) 本會會員으로서 本會의 定款을 違反하거나 또는 本會의 名譽를 毀損시키는 行爲를 한 者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除名할 수 있다.

第 10 條 (資格停止 및 喪失) 本會의 會費를 2年以上 納付치 않은者는 會員資格이 停止된다. 資格停止發効日以後 滿 2年內에 滯納會費의 納付로 會員資格이 復歸된다. 但 資格停止發効日以後 2年이 經過한 者는 自動的으로 除名된다.

第 11 條 (脫會) 本會 會員中 本會를 脫會코져 하는者는 會員辭退書를 本會事務局에 提出함으로써 脫會된다. 또한 本人死亡도 脫會로 看做한다

### 第 3 章 任員職員 및 部署

第 12 條 ①(任員의 定員) 本會에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會長 1名

(2) 副會長 3名

(3) 理事 33名(會長 副會長 包含)

(4) 參與理事 若干名

(5) 監事 2名

②(任員의 性格) 各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③(會長의 職務)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④(副會長의 職務)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는 副會長中 年齡順에 의하여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理事 및 參與理事의 職務) 理事 및 參與理事는 理事會를 通하여 主要 會務의 議決에 參加한다.

⑥(監事의 職務) 監事는 會計事務를 監査하며 其結果를 總會에 報告하고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⑦(任員의 選定)

(1) 會長, 副會長, 參與理事 및 監事는 任員選出委員會에서 選出하여 總會의 認准으로 推戴한다.

(2) 理事는 會長이 選任하여 總會의 一括認准을 받는다. 但 理事의 半數(15명)씩은 隔年으로 選出한다.

(3) 任員選出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 名譽會長 參與理事 支部長으로 構成하고 其運營과 任員選出에 關한 規定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⑧(再選) 任員(參與理事 除外)은 再選될 수 있으나 會長은 重任하지 않는다.

⑨(任員의 任期) 參與理事는 終身 其他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欠員으로 補選된 理事의 任期는 먼저 任員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⑩任期가 滿了된 任員은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 그 職務를 擔當한다.

第 13 條 ①(名譽會長 推戴) 前 會長中에서 功績이 顯著한 分을 總會에서 名譽會長으로 推戴한다.

②(參與理事推戴) 本會 前任 任員으로서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分을 總會 決議로서 參與理事로 推戴한다.

③名譽會長은 모든 會議에 出席하여 議決에 參加할 수 있다.

第 14 條 (部署) 本會에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두되 部長은 理事中에서 會長이 委嘱한다.

①總務部: 本會의 一般事務에 關한 事務經理에 關한 事項 支部監督에 關



한 事項 기타 他部에 속하지 않은 事項

② 研究部: 學術 技藝의 研究 調査에 관한 事項

③ 事業部: 啓蒙 宣傳 刊行 目的에 따른 諸事業에 관한 事項

第 15 條 (事務局) 本會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內에 有給職員 若干名을 두되 理事會의 議決로 會長이 任命한다. 職員은 會長, 副會長 各 部長의 指導下에 事務를 分擔한다.

#### 第 4 章 會 議

第 16 條 (회의 種類) 本會 會議은 다음과 같은 2種으로 한다.

1. 總會

2. 理事會

第 17 條 (總會) 總會는 定期 臨時의 2種으로 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 하되 7 日以前에 그 會議 目的事項을 指示하여 이를 通知한다.

第 18 條 (總회의 成立) 總會는 在籍會員 正會員의 1/10 이상 出席으로 成立한다.

第 19 條 (定期總會와 臨時總會의 召集) ① 定期總會는 每年 1 回 4 月중 에 召集한다. 臨時總會는 다음 경우에 會長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1) 理事會 決議로서 要求할 때

(2) 會員 1/20 이상의 連署로서 要求할 때

(3)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② 臨時總會를 要求할 때는 理由를 書面으로 明示하여야 한다.

但, 臨時總會 召集要求를 接受하였을 때는 그 接受한 날로부터 20 日 이내 에 召集하여야 한다.

第 20 條 (總회의 議決事項) 總회의 議決을 認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任員의 認准

2. 事業計劃

3. 豫算 및 決算

4. 定款의 改廢 및 變更

5. 財産의 取得管理 및 処分

6. 기타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 21 條 (總회의 議題) 會長은 理事會의 承認을 거쳐 다음 事項을 定期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1. 前年度 收支決算 및 次年度 收支豫算

2. 前年度 末에 있어서의 財産目錄

3. 事業의 実績 및 計劃

4. 本會의 債權 및 債務

第 22 條 (總會議事) 總會의 議事は 出席 正會員의 多數決로써 이를 決定하되 可否同數일 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 23 條 (理事會 成立과 議決) 理事會는 理事 參與理事로서 構成하며 月 1 回以上 會長이 召集하고 在籍理事의 2 分の 1 以上 出席으로 成立한다.

議決은 理事會에 參席한 理事 및 參與理事의 過半數로 決定한다.

第 24 條 (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의 議決을 認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諸規定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事項

2. 事業計劃의 決定 및 變更에 관한 事項

3. 會員의 除名 懲戒 및 權利行使의 停止에 관한 事項

4.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諸委員會의 設置에 관한 事項

5. 褒賞者 決定에 관한 事項

6.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7. 기타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重要事項

8. (議事錄) 本會의 總會 및 理事會의 會議錄은 議長이 作成하고 出席理事의 署名 捺印한 다음 事務局에 保管한다.

#### 第 5 章 資 產 及 會 計

第 25 條 (資產의 構成) 本會의 資產은 다음 項目으로써 構成된다.

1. 會員이 納付한 入會金 및 會費

2. 贊助金과 贊助한 物件

3. 資產에서 생긴 收益

4. 기타의 收入

第 26 條 ① (基本資產) 本會에 基本資產을 둔다.

(1) 基本資產으로 指定寄附된 贊助金 및 物件

(2) 總會에서 基本資產으로 編入을 決議한 財産

② (基本資產의 助成) 基本資產을 助成하기 위하여 每年度 決算移越金의 1 割以上을 積立할 수 있다.

第 27 條 (通常資產) 基本資產以外의 資產을 通常資產으로 한다.

- 第 28 條 ( 經 費 ) 本會의 經費는 通常資産으로써 充當한다.
- 第 29 條 ( 資 産의 管 理 ) 基本資産의 管理方法은 理事會에서 定하고 本會의 모든 資産은 會長이 이를 管理한다.
- 第 30 條 ( 特別會計 ) 必要한 경우에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特別會計를 設치할 수 있다.
- 第 31 條 ( 會計年度 )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 月 1 日부터 翌年 3 月 31 日까지로 한다.

### 第 6 章 支 部 및 地 方 幹 事

- 第 32 條 ( 支 部의 構 成 ) ① 支 部는 該當 市道 및 外國에 設置할 수 있다  
 ② 支 部構成은 該當地域에 居住하는 正會員 10 名以上으로 한다.
- 第 33 條 ( 支 部任 員 ) 支 部에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支 部 長 1 名
  2. 支 部評 議 員 若 干 名
  3. 支 部 幹 事 1 名
  4. 支 部 監 事 1 名
- 第 34 條 ( 支 部任 員의 選 出 ) 支 部의 任員은 支 部規約에 따라 選出하고 支 部長 및 支 部幹事는 支 部の 推 薦을 거쳐 會長이 이를 認准한다.
- 第 35 條 ( 支 部長의 義 務 ) ① 支 部長은 每年 3 月에 任員名單 會員名單 前年度의 會計報告書와 監事報告를 本會 會長에게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② 支 部長은 會員의 移 動이 있을 때는 즉시 本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 第 36 條 ( 支 部の 義 務 ) 支 部는 本會의 總會 및 理事會의 議決을 이행 할 義 務를 갖는다.
- 第 37 條 ( 支 部規約 ) 支 部規約은 支 部가 作 成하되 本會 理事會에서 承認을 얻어야 한다.
- 第 38 條 ( 支 部運 營 ) 支 部運 營은 支 部에 所屬하는 通常資産으로 充當한다. 支 部の 通常資産中 本會에 納付하는 比率은 別도 理事會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 39 條 ( 支 部總會의 參 席 ) 支 部總會時에는 本部에서 理事 1 人以上을 派 遣하여 參席키로 한다.
- 第 40 條 ( 地 方 幹 事 ) ① 支 部가 設置되지 않은 地域의 會員을 위하여 그 地域에 地 方 幹 事를 둘 수 있다.

- ② 地 方 幹 事는 그 地域住在 正會員中에서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會長이 任命한다. 地 方 幹 事의 任 期는 本會 任員과 같다.
- ③ 地 方 幹 事는 每年 3 月에 所屬會員 名單을 本會 事務局에 報告하여야 하고 會員의 移 動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 第 41 條 ( 支 部長 地 方 幹 事의 權 利 ) 支 部長 및 地 方 幹 事는 本會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 見을 陳述할 수 있다.

### 第 7 章 定 款 變 更 과 解 散

- 第 42 條 ( 定 款 變 更 ) 本會 定 款中 第 20 條 第 4 号는 總會에서 出席 正會員의 2 / 3 以上의 同 意를 얻어야 한다.
- 第 43 條 ( 解 散 ) 本會가 解 散코저 할 때는 總會에서 出席 正會員의 3 / 4 以上의 同 意를 얻어 登 録撤回에 따른 主務官庁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 第 44 條 ( 資 産의 處 理 ) 本會가 解 散할 때의 殘余資産은 總會의 議決에 依하여 處 理한다.

#### 附 則

1. 本會 定款은 未詳한 곳은 理事會의 決議로 規程을 정한다.
2. 第 20 條의 4 , 5 号는 主務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3. 旧定款下의 登 録된 會員 및 選出된 任員은 本定款이 發効되는날 本定款下에 登 録된 會員 및 選出된 任員으로 본다.
4. 本 定款은 1971 年 4 月 17 日부터 効力을 發生한다.

#### 附 則

-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74 年 6 月 12 日부터 効力을 發生한다.
-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77 年 5 月 26 日부터 効力을 發生한다.
-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78 年 6 月 9 日부터 効力을 發生한다.
-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79 年 5 月 30 日부터 効力을 發生한다.